



공정거래위원회

공정거래위원회



수신 참여연대

(경유)

제목 신고에 대한 회신

사건번호 : 2012서제3834

사건명 : (주)코리아세븐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

피조사인 : (주)코리아세븐

신고인 : 참여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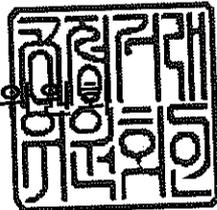
위 사건을 2013서제0454-0575사건과 병합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.

1. 피조사인의 24시간 영업의무 부과행위 및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법위반여부의 판단이 어렵고, 사실 확인이 곤란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 제1항, 제46조 제4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종료 처리하였습니다.

2. 피조사인이 중도해지위약금 조항, 송금지연위약금 조항, 계약책임 담보관련 조항을 부당하게 설정한 행위는 가맹계약 체결 전의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, 거래 개시 전에는 거래상지위 자체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할 것이므로 위 절차규칙 제53조의2 제1항, 제46조 제1호, 제12조 제1항 제31호에 의거하여 심의절차종료 처리하였습니다.

※ 참고로 중도해지위약금 조항, 송금지연위약금 조항, 계약책임 담보관련 조항을 부당하게 설정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 끝.

공정거래위원회



행정사무관 이동미 제조하도급과 전결 2015. 10. 20.
과장 최영수

협조자

시행 제조하도급과-5917 (2015. 10. 20.) 접수

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(중앙동, 정부과천청사) 서울지방 / <http://www.ftc.go.kr>
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

전화번호 02-2110-6169 팩스번호 02-2110-0655 / nrym@ftc.go.kr / 비공개(7)

"대한민국! 2014년 UN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, - 3회 연속 -"